업무지침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2018. 3.

보건복지부

목 차

※ 주요 개정 사항 1

Ⅰ. 면허신고 22

1. 개 요 22
2. 의료인·의료기사등 면허신고 26
3.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30
4. 행정처분사항 33
5. 행정사항 34

Ⅱ. 보수교육 36

1. 개 요 36
2. 의료인 보수교육 41
3.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51
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66
5. 보수교육비 산정 78
6. 행정처분사항 80
7. 행정사항 81

Ⅲ. 참고서식 86

'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면허신고】		
26p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의료인)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1)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2. 4. 29부터 '13. 4. 28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2.4.29~'12.12.31)에 신고하였으면, '15.1.1~'15.12.31에 재신고 - ('13.1.1~'13.4.28)에 신고하였으면, '16.1.1~'16.12.31에 재신고 ○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0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8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2) **'12.4.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표 1]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의료인)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1)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2. 4. 29부터 '13. 4. 28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2.4.29~'12.12.31)에 신고하였으면, '15.1.1~'15.12.31에 재신고 - ('13.1.1~'13.4.28)에 신고하였으면, '16.1.1~'16.12.31에 재신고 ○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0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8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2) **'12.4.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표 2]

[표 1]

그룹명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2.4.29~2012.12.31	2015	2018
3B	2013.1. 1~2013.12.31	2016	2019
3C	2014.1. 1~2014.12.31	2017	2020
4C	2015.1. 1~2015.12.31	2018	2021
산식	X	(X+3)	(X+6)

* 면허를 '15.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8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표 2]

그룹명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2.4.29~2012.12.31	2015	2018
3B	2013.1. 1~2013.12.31	2016	2019
3C	2014.1. 1~2014.12.31	2017	2020
4C	2015.1. 1~2015.12.31	2018	2021
산식	X	(X+3)	(X+6)

* 면허를 '15.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8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면허를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table>
<tr><th>페이지</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td><td>(lic.mohw.go.kr)</td><td>말일까지 신고
※ (예) ‘10.3.20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2013년 면허신고 이전에 2013.4.23.에 면허 취소되어 2018.3.20.에 재교부 받았다면, 취소기간인 2013, 2014, 2015, 2016, 2017년은 면제, 2011, 2012년까지 취업상황, 실태 등을 신고한 후 해당업무 복귀, 면허 재발급 받은 해(2018년)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2021년에 면허신고
※ 절차: 면허취소 → 면허재발급 → 면허신고 → 업무 복귀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lic.mohw.go.kr)</td></tr>
<tr><td>27p</td><td>✓ (의료기사 등)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1)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15.1.6부터 ’15.11.22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2차 신고 : ’18.1.1~’18.12.31에 실시
○ 단, ’14.11.23.~’14.12.31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본인 희망 시 3년 뒤인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신고 가능(일괄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행정처분하지 않음)
○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4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0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7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2) ’15.1.1.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최초 신고
<table><tr><th>그룹명</th><th>면허 발급 연도</th><th>최초 신고 연도</th><th>차기 신고 연도</th></tr><tr><td>3A</td><td>2015.1.1.~2015.12.31</td><td>2018</td><td>2021</td></tr><tr><td>3B</td><td>2016.1.1.~2016.12.31</td><td>2019</td><td>2022</td></tr><tr><td>3C</td><td>2017.1.1.~2017.12.31</td><td>2020</td><td>2023</td></tr><tr><td>≀</td><td>≀</td><td>≀</td><td>≀</td></tr><tr><td>산식</td><td>X</td><td>(X+3)</td><td>(X+6)</td></tr></table>※ (예) 면허를 ’15.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td><td>✓ (의료기사등)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1)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15.1.6부터 ’15.11.22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2차 신고 : ’18.1.1~’18.12.31에 실시
○ 단, ’14.11.23.~’14.12.31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본인 희망 시 3년 뒤인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신고 가능(일괄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행정처분하지 않음)
○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4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0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8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2) ’15.1.1.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인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최초 신고
<table><tr><th>그룹명</th><th>면허 발급 연도</th><th>최초 신고 연도</th><th>차기 신고 연도</th></tr><tr><td>3A</td><td>2015.1.1.~2015.12.31</td><td>2018</td><td>2021</td></tr><tr><td>3B</td><td>2016.1.1.~2016.12.31</td><td>2019</td><td>2022</td></tr><tr><td>3C</td><td>2017.1.1.~2017.12.31</td><td>2020</td><td>2023</td></tr><tr><td>4C</td><td>2018.1.1.~2018.12.31</td><td>2021</td><td>2024</td></tr><tr><td>산식</td><td>X</td><td>(X+3)</td><td>(X+6)</td></tr></table>※ (예) 면허를 ’16.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9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td></tr>
</table>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18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발급자** -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lic.mohw.go.kr)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발급자** ○ 면허 취소 의료기사등이 면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면허를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예) '12.3.20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등이 '16.4.23.에 면허 취소되어 '18.3.20.에 재교부 받았다면, 취소기간인 2016, 2017년은 면제, 2014, 2015년까지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절차: 면허취소 → 면허재발급 → 면허신고 → 업무 복귀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lic.mohw.go.kr)
30p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연도별 자격신고기간** (1) **'17.1.1.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7. 1. 1.부터 '17. 12. 31.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7.1.1.~'17.12.31.)에 신고하였으면, '20.1.1.~'20.12.31.에 재신고 ○ '17.1.1.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6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5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9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실태 등 신고 (2) **'17.1.1.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연도별 자격신고기간** (1) **'17.1.1.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7. 1. 1.부터 '17. 12. 31.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7.1.1.~'17.12.31.)에 신고하였으면, '20.1.1.~'20.12.31.에 재신고 ○ '17.1.1.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6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5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9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실태 등 신고 (2) **'17.1.1. 이후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table>
<tr><th>페이지</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td><td>
<table>
<tr><th>그룹명</th><th>자격 발급 연도</th><th>최초 신고 연도</th><th>차기 신고 연도</th></tr>
<tr><td>3A</td><td>2017.1.1～2017.12.31</td><td>2020</td><td>2023</td></tr>
<tr><td>3B</td><td>2018.1.1～2018.12.31</td><td>2021</td><td>2024</td></tr>
<tr><td>3C</td><td>2019.1.1～2019.12.31</td><td>2022</td><td>2025</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산식</td><td>X</td><td>(X+3)</td><td>(X+6)</td></tr>
</table>
* 면허를 '17.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020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본인의 자격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lic.mohw.go.kr)
</td><td>
<table>
<tr><th>그룹명</th><th>자격 발급 연도</th><th>최초 신고 연도</th><th>차기 신고 연도</th></tr>
<tr><td>3A</td><td>2017.1.1～2017.12.31</td><td>2020</td><td>2023</td></tr>
<tr><td>3B</td><td>2018.1.1～2018.12.31</td><td>2021</td><td>2024</td></tr>
<tr><td>3C</td><td>2019.1.1～2019.12.31</td><td>2022</td><td>2025</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산식</td><td>X</td><td>(X+3)</td><td>(X+6)</td></tr>
</table>
* 면허를 '17.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020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자격취소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을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자격증을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예) '10.3.20에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가 2017년 자격신고 이전에 2013.4.23.에 자격 취소되어 2018.3.20.에 재교부 받았다면, 취소기간인 2016, 2017년은 면제, 2018년부터 취업상황, 실태 등을 해당업무 복귀전에 신고
※ 절차: 자격취소 → 자격재발급 → 자격신고 → 업무 복귀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lic.mohw.go.kr)
</td></tr>
<tr><td>34p</td><td>
다. '17년까지 미신고자에 대한 '18년 행정처분 계획
○ (의료인)
- 의료인 사전통지자* 중 미신고자 대상 행정처분('18.上)
* 비현업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 면허미신고자 대상 사전통지('18.上) 및 행정처분('18.下)
○ (의료기사등) 면허미신고자 대상 사전통지*('18.上) 및 행정처분('18.下)
* '17년12월 사전통지 미안내 의료기사등(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td><td><삭제></td></tr>
</table>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인 보수교육】		
41p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 (재교부 받은 자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 (재교부 받은 자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중인 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군대에 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
42p	✓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신설> ■ 치과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17년도에 의과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예) '17년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예: 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이라면 보수교육 면제) ■ <신설>	✓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치과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17년도에 치의학대학원이 아닌 의과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예1) '18.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 (예2)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8.11월 입대 후 '20.8월 제대한 경우, '18년 보수교육 이수, '19년 보수교육 면제, '20년 보수교육 면제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예: 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이라면 보수교육 면제) ■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table>
<tr><th>페이지</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td><td>■ <신설></td><td>(예) '18.3.17～'18.9.16 : 6개월 미만
'18.2.2～'18.8.2 : 6개월 이상
'18.4.2～'18.10.3 : 6개월 이상
※ 비전속근무자(주 3일 근무 등)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18.1.1(최초근무일)～'18.6.28일(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
■ 육아휴직 중인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아이 1명당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해당연도만 면제
*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개월 수를 포함하여 산정
※ 2018년도 출산 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예1) '18.5.1일 출산, 90일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18.7.29일 복직한 경우는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2) '18.11.1일 출산예정일, '18.9.23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1년 육아휴직('18.12.21～'19.12.20), '19.12.2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도 보수교육 대상(8시간)
(예3) '18.2.1일 출산, '18.5.1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퇴사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4) '18.12.1일 출산, '19.2.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2년 육아휴직('19.3.1～'21.2.28), '21.3.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 비대상, '20년 비대상, '21년 보수교육 대상(1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td></tr>
<tr><td>44p</td><td>(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0호의2 서식)" 작성 → 중앙회장에게 제출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table><tr><td>면제
(제6항)</td><td>전공의(1호) ⇒ 재직증명서</td></tr></table></td><td>(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0호의2 서식)" 작성 → 중앙회장에게 제출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table><tr><td>면제
(제6항)</td><td>전공의(1호)</td><td>⇒ 재직증명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td></tr></table></td></tr>
</table>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table><tr><td></td><td>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2호)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규 면허 취득자(3호) ⇒ 면허증 사본 <신설></td></tr><tr><td>유예 (제7항)</td><td>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1호) ● 휴직/ 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td></tr></table>	<table><tr><td></td><td>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2호)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규 면허 취득자(3호) ⇒ 면허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4호)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td></tr><tr><td>유예 (제7항)</td><td>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1호) ● 휴직/ 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td></tr></table>
45p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사례】** ■ '11년~15년까지 해외 유학 후, '16년 1월에 귀국하여 5월부터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16년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 24시간 ■ '13년~'15년에 유예, '16년에 면제, '17년 1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17년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 24시간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 '14년~'16년까지 해외 체류 후, '17.1월에 귀국하여 '17.5월부터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18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총 20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14~'16년 유예, '17년 20시간(3년이상)) ■ '14년~'15년에 유예, '16년에 면제(예: '16.1월~12월까지 전공의 신분), '17년 1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18년 면허신고를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 16시간 ('14~'15년 유예, '16년 면제, '17년 16시간(2년 이상 3년 미만)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 '03년 면허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2.1월부터 '14.12월까지 면허취소, '15.1월 면허를 재발급 받아 '15.2.1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라면, ☞ 재발급 받은 해로부터 3년 후인 2018년에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총 40시간('15년 24시간, '16~'17년 각 8시간씩)의 보수교육을 이수 후 면허신고해야 함	■ '12년 면허신고 완료, '13.1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중 '14.1월부터 '15.12월까지 면허 취소, '16.2월 업무복귀하려는 경우 ☞ '16.1월 면허 재발급 후 '16년 면허신고를 하고 업무 복귀를 하여야 하며, '16년 면허 신고를 위해서는 '12년 8시간, '13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14년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데 면허 신고 이전에 '14.3월부터 '15.12월까지 면허취소, '16.1월에 업무복귀하려는 경우 ☞ 면허 재발급 후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며, '16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11년~'13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2016년 면허신고 이후 2019년 면허신고를 다시 해야 함
47p	**라. 보수교육 내용**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18.1.1 시행예정)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별지서식 개정 추진 중*** * '16.9월 입법예고, '17.2월 공포 예정('18.1.1 시행)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 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라. 보수교육 내용**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18.1.1 시행)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16.9월 입법예고, '17.3월 공포('18.1.1시행)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18년 신고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19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
48p	<신설>	○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 해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49p	○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가능(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이 매년 21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수교육으로 인정함	○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가능(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시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하에 시행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이 매년 21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수교육으로 인정함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51p	**가. 보수교육 대상** :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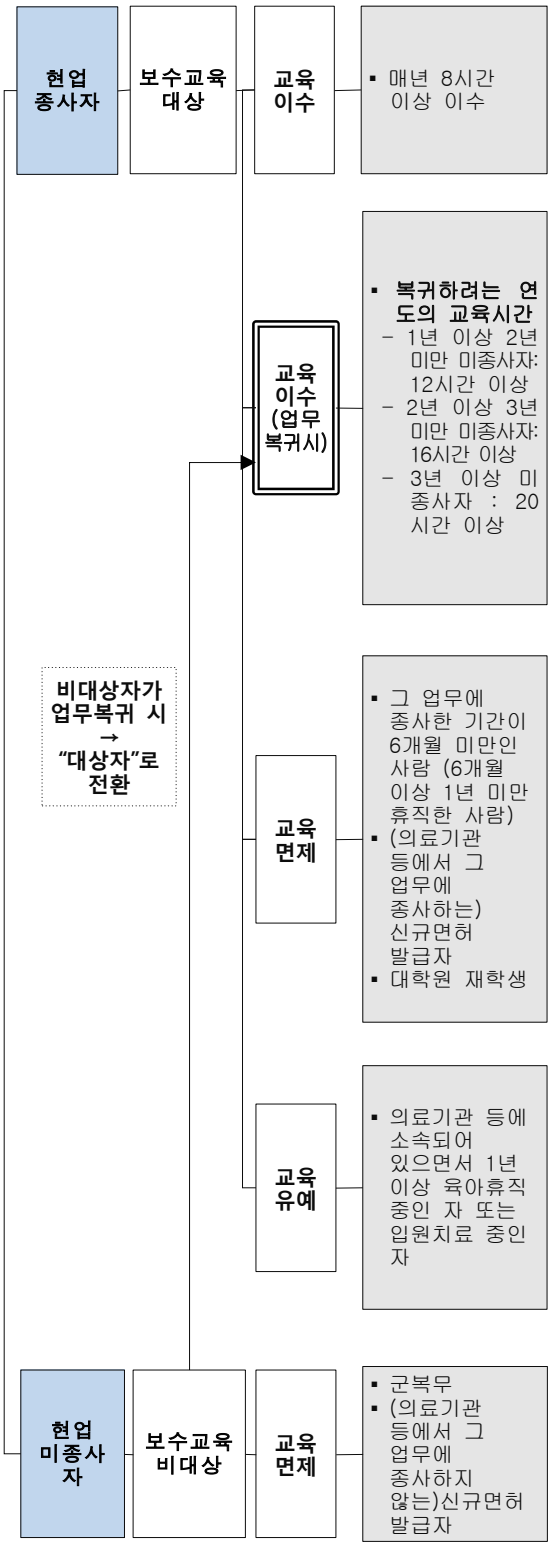 	**가. 보수교육 대상** :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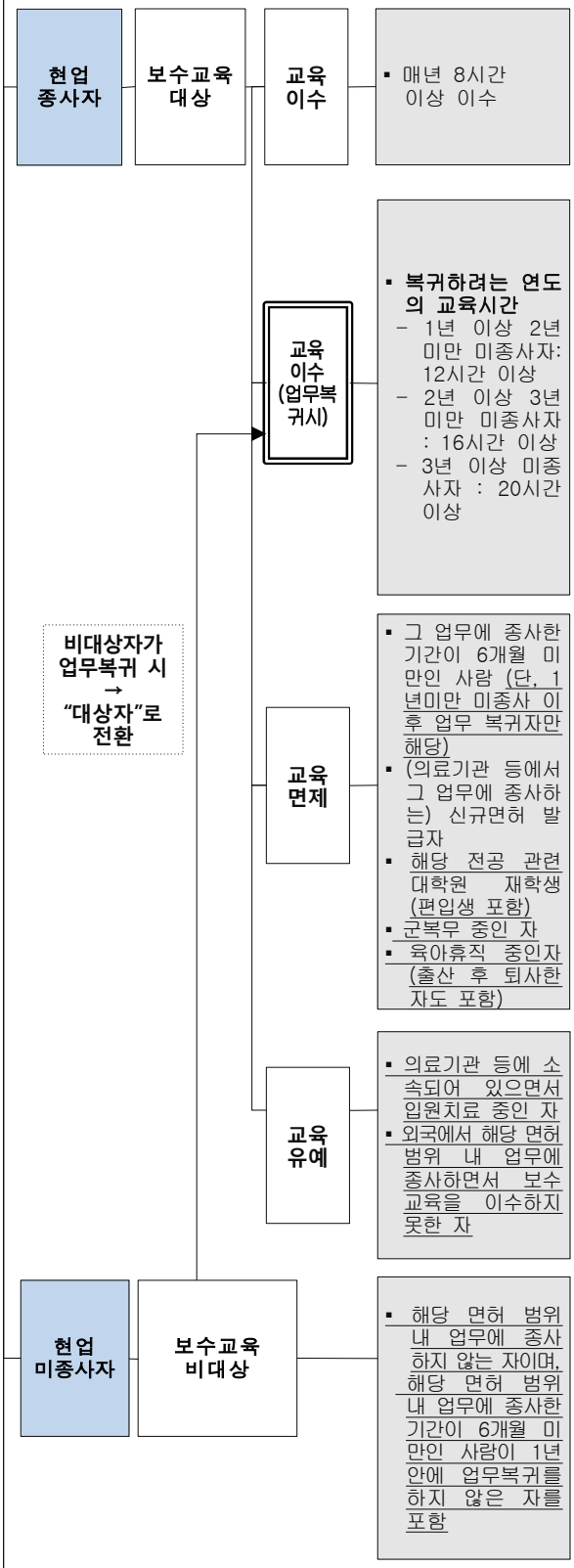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52p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과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법 제20조, ‘16.11.30시행) - 다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보건의료인면허신고시스템 구현(‘17.4월 예정) 시부터 적용) * “비대상자” 관련, 법령 개정 예정 ○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면허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사례】** ‘13년 면허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4.1월부터 ’15.5월까지 면허취소, ’15.6월 면허를 재발급 받아 ’15.7.1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기사라면, → 재발급 받은 해로부터 3년 후인 2018년에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총 28시간(‘15년 12시간, ’16~‘17년 각 8시간씩)의 보수교육을 이수 후 면허신고해야 함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과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법 제20조, ‘16.11.30시행) - 다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보건의료인면허신고시스템 구현(‘17.7월)시부터 적용) ○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면허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사례】** ‘15년 면허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7.1월부터 ’18.5월까지 면허취소, ’18.6월 면허를 재발급 받아 업무 복귀 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18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16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18년에 면허신고 완료한 자는 3년 후인 2021년에 면허신고를 해야 함
53p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전속·비전속 근무 모두 포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전속·비전속 근무 모두 포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
54p	○ 군 복무 중*인 사람(단,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 *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일컬음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등(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의료기사등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	○ 군 복무 중인 사람 -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사회대체복무 포함)을 의미하며,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은 제외 ○ 현재 해당 면허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으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등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사한 자 포함)
55p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예) '17년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2014년 1월~2014년 10월 근무, 2014년 11월~2015년 7월 휴직하고 2015년 8월 1일에 면허신고 할 경우, 2014년도는 6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며 2015년도는 해당연도 내 6개월 이상 휴직하였으므로 보수교육 면제 ■ 2014년 6월~2015년 1월 비전속(주 3일 근무)으로 근무하고 2015년 2월 2일 면허신고 하는 경우, '14년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음(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비전속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임)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2016년도)** ■ 2014년 1월~2014년 10월 근무, 2014년 11월~2015년 7월 휴직하고 2015년 8월 1일에 면허신고 할 경우, 2014년도는 6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며 2015년도는 해당연도 내 6개월 이상 휴직하였으므로 보수교육 면제 ■ 2014년 6월~2015년 1월 비전속(주 3일 근무)으로 근무하고 2015년 2월 2일 면허신고 하는 경우, '14년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음(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비전속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임)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2017년 이후)**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1학기 또는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예1) '18.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 (예2)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8.11월 입대 후 '20.8월 제대한 경우, '18년 보수교육 이수, '19년 보수교육 면제, '20년 보수교육 면제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각각 제출하여야 함 ■ '16.1월부터 '17.11월까지 해당 면허범위 내 업무에 미종사(육아휴직, 미취업)하다가 '17.12월에 해당 면허범위 내 업무에 복귀한 자는 2017년 보수교육 면제 ☞ 2017년에 6개월 미만 업무 종사자이면서 해당 면허범위 업무에 1년 미만 미종사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복귀한 자에 해당 ☞ 해당 면허범위 내 업무 미종사 기간은 2017.1.1.일부터 기산 ■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 '18.3.17~'18.9.16 : 6개월 미만 '18.2.2~'18.8.2 : 6개월 이상 '18.4.2~'18.10.3 : 6개월 이상 ※ 비전속근무자(주 3일 근무 등)는 실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18.1.1(최초근무일)~'18.6.28일(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 ■ '17.1월~'17.10월 근무, '17.11월~'19.7월 휴직하고 '19.8월에 복직한 경우, '17년도 8시간, '18년 비대상, '19년도 12시간(1년이상 2년 미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업무 미종사 기간 : '18.1.1~'19.7월 ■ '17.1월~'17.10월 근무, '17.11월~'20.7월 휴직하고 '20.8월에 복직한 경우, '17년도 8시간, '18년 비대상, '19년 비대상, '20년도 16시간(2년이상 3년 미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업무 미종사 기간 : '18.1.1~'20.7월 ■ 한국에서 의료기사 자격을 가지고, 이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국가에서 보수교육에 상당하는 교육이 없다면 보수교육 유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 ■ 육아휴직 중인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아이 1명당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해당연도만 면제 *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 휴직 개월 수를 포함하여 산정 ※ 2018년도 출산 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예1) '18.5.1일 출산, 90일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18.7.29일 복직한 경우는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table>
<tr><th>페이지</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td><td></td><td>(예2) ’18.11.1일 출산예정일, ’18.9.23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1년 육아휴직(’18.12.21～’19.12.20), ’19.12.2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도 보수교육 대상(8시간)
(예3) ’18.2.1일 출산, ’18.5.1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퇴사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4) ’18.12.1일 출산, ’19.2.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2년 육아휴직(’19.3.1～’21.2.28), ’21.3.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 비대상, ’20년 비대상, ’21년 보수교육 대상(1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td></tr>
<tr><td>57p</td><td>(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1년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또는 입원치료 중인 자
*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보수교육 비대상자와 사실상 차이가 없음</td><td>(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 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보수교육 비대상자와 사실상 차이가 없음</td></tr>
<tr><td>57p</td><td>【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table><tr><td>면제
(제4항)</td><td>6개월 미만 종사자(1호) ⇒ 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2호) ⇒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군복무자(3호) ⇒ 현역복무확인서
신규면허 취득자(4호) ⇒ 면허증 사본
<신설></td></tr><tr><td>유예
(제5항)</td><td>본인의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5항)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 1년이상 육아휴직자 : 휴직증명서</td></tr></table></td><td>【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table><tr><td>면제
(제4항)</td><td>6개월 미만 종사자(1호) (1년 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 ⇒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군복무자(2호) (군대에서 해당면허 종사자는 제외)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3호) ⇒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규면허 취득자(4호) ⇒ 면허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5호) ⇒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td></tr><tr><td>유예
(제5항)</td><td>본인의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5항)
● 병원 : 입퇴원 확인서</td></tr></table></td></tr>
</table>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58p	(5)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중 '군복무자'와 '신규면허 취득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처리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2)항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5)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연도에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중 '군복무자'와 '신규면허 취득자',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육아휴직 중인자(출산 후 퇴사한 자 포함)은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처리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4)항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58p	<신설>	【사례1】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채용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취업의 조건일 경우 → 해당 의료기사 면허를 가지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임 다만, 의료기사등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처리 【사례2】 의료기사 자격증 소지가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의무병 및 직업군인으로서 근무시 교육이수 대상 여부 → 의무병 등 사병의 특성상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은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는 기간은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보나, 직업 군인(해당 면허 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사례3】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해당 전공 관련 교수(실습을 포함한 교육 등)로 재직하는 경우 → 의료기사등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처리 (다만, 해당 교원이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면허 범위내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67p	**가.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보수교육대상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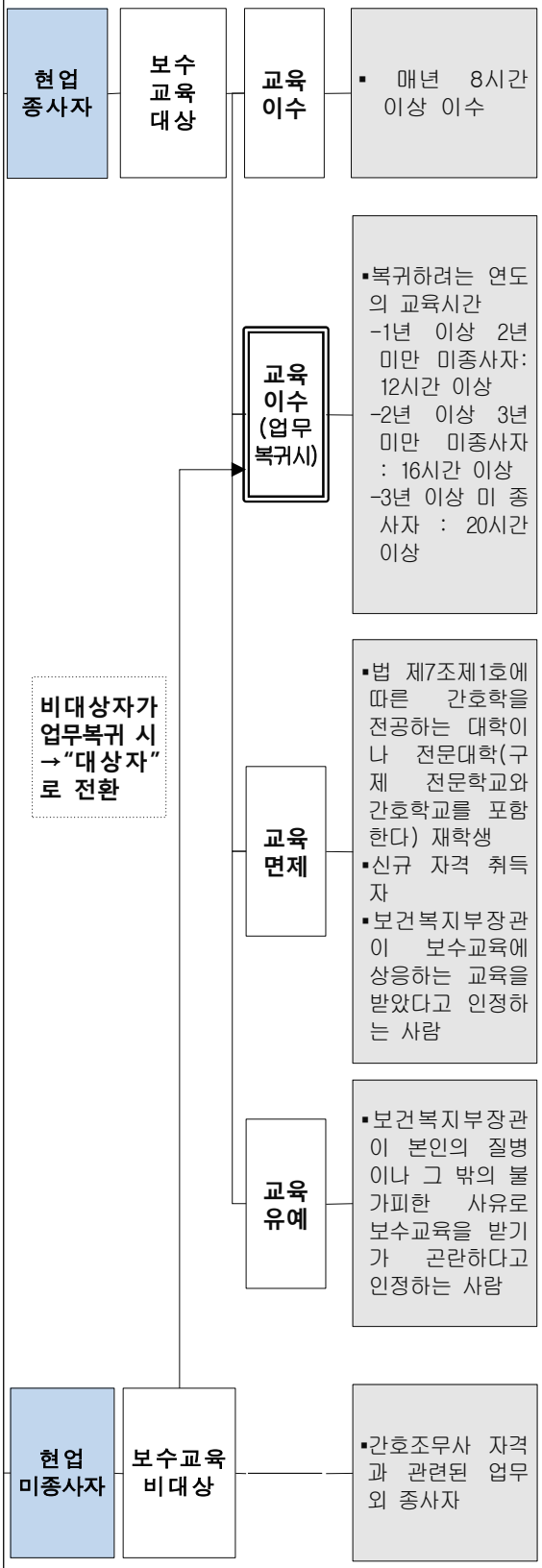 	**가.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보수교육대상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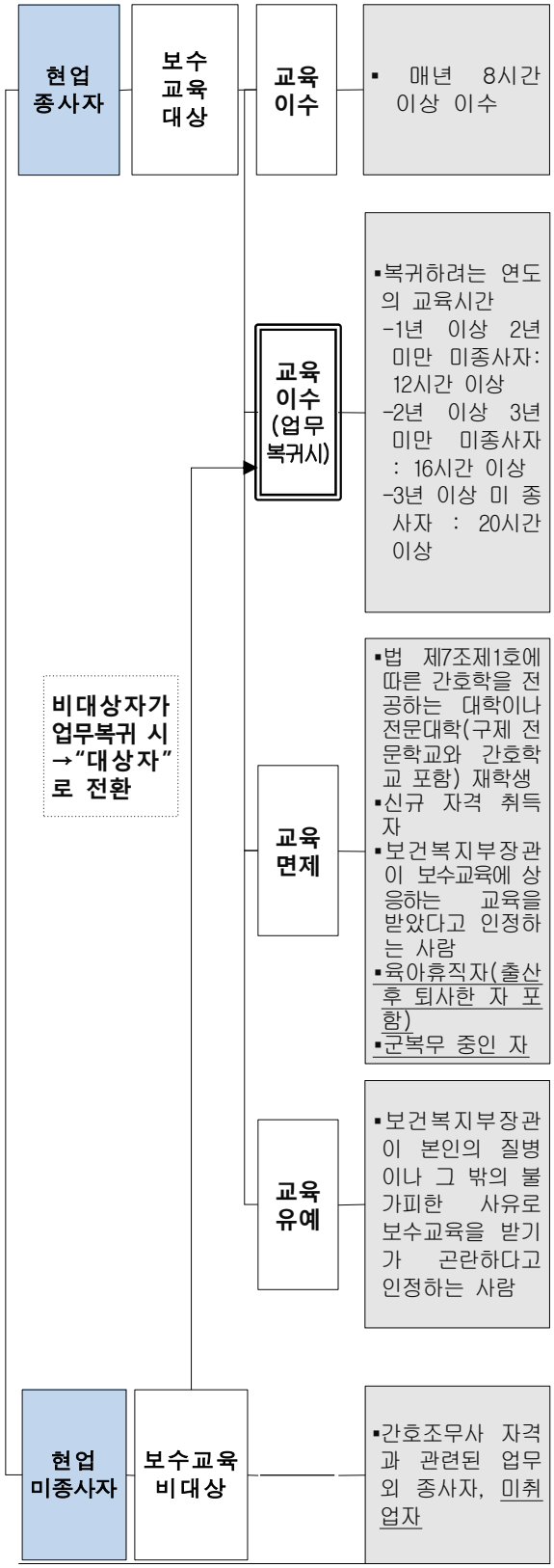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67p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17.1.1일부터 적용) <신설> ○ 자격 취소된 자는 간호조무사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자격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사례】** '13년 자격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6.1월부터 '17.5월까지 자격취소, '17.6월 자격을 재발급 받아 '17.7.1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라면, → 재발급 받은 해로부터 3년 후인 2020년에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총 28시간('17년 12시간, '18~'19년 각 8시간씩)의 보수교육을 이수 후 면허신고해야 함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17.1.1일부터 적용) - 2016년도 업무 미종사자는 유예 대상자임 **【사례1】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채용시 간호조무사 면허가 취업의 조건일 경우** → 해당 간호조무사 면허를 가지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임 다만,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20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으로 처리, 2017년부터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처리 **【사례2】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가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의무병 및 직업군인으로서 근무시 교육 이수 대상 여부** → 의무병 등 사병의 특성상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은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는 기간은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보나, 직업 군인의 경우 보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 자격 취소된 자는 간호조무사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자격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사례】** '14년 자격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6.1월부터 '18.5월까지 자격취소, '18.6월 자격을 재발급 받았다면 업무 복귀 전에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18년 자격신고를 완료한 자는 3년 후인 2021년에 자격신고를 해야 함
68p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의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의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간호대학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신설> ■ <신설>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자격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2017년 2월~2017년 10월 의원 근무, 2017년 11월~2019년 7월 휴직하고 2019년 8월부터 다시 근무하여 2020년 1월에 자격신고 할 경우, 2017년도는 근무했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는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하므로 12시간의 보수교육 의무 발생(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 2017년 6월~2018년 비전속(주 3일 근무)으로 병원에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 2020년 2월 자격신고 하는 경우 2017년도, 2018년도는 근무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보수교육 대상 아님(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비전속 근무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임) ■ <신설> ■ <신설>	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사한 자 포함)*, 군대에서 일반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군대에서 해당자격 종사자는 제외) * 아이 1명당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해당연도만 면제 ✓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간호대학(원)에서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간호대학(원)에서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간호조무사가 의과(치과, 한의과)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는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자격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2017년 2월~2017년 10월 의원 근무, 2017년 11월~2019년 7월 휴직하고 2019년 8월부터 다시 근무하여 2020년 1월에 자격신고 할 경우, 2017년도는 근무했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는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하므로 12시간의 보수교육 의무 발생(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 2017년 6월~2018년 비전속(주 3일 근무)으로 병원에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 2020년 2월 자격신고 하는 경우 2017년도, 2018년도는 근무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보수교육 대상 아님(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비전속 근무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임)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 육아휴직 중인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아이 1명당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해당연도만 면제 *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개월 수를 포함하여 산정 ※ 2018년도 출산 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예1) '18.5.1일 출산, 90일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18.7.29일 복직한 경우는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2) '18.11.1일 출산예정일, '18.9.23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1년 육아휴직('18.12.21~'19.12.20), '19.12.2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도 보수교육 대상(8시간) (예3) '18.2.1일 출산, '18.5.1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퇴사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4) '18.12.1일 출산, '19.2.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2년 육아휴직('19.3.1~'21.2.28), '21.3.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 비대상, '20년 비대상, '21년 보수교육 대상(1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 군복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군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수교육 이수, 6개월 미만이면 보수교육 면제 (예)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8.11월 입대 후 '20.8월 제대한 경우, '18년 보수교육 이수, '19년 보수교육 면제, '20년 보수교육 면제 ■ 6개월 미만 여부는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 '18.3.17~'18.9.16 : 6개월 미만 '18.2.2~'18.8.2 : 6개월 이상 '18.4.2~'18.10.3 : 6개월 이상
70p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1년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또는 입원치료 중인 자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 ✓ **보수교육 유예여부 유권해석례** ■ '17.1.1.부터 하루라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이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table>
<tr><th>페이지</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td><td></td><td>해당국가에서 보수교육에 상당하는 교육이 없다면 유예대상자로 관리해야 함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임)</td></tr>
<tr><td>71p</td><td>(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제4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table><tr><td>면제
(제4항)</td><td>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재학생(1호) ⇒ 당해연도 재학증명서
신규 면허 취득자(2호) ⇒ 자격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 (3호) ⇒ 해당 사항 확인서 ⇒ <신설></td></tr><tr><td>유예
(제5항)</td><td>본인의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2항)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 1년 이상 육아휴직자 : 휴직증명서</td></tr></table></td><td>(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제3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table><tr><td>면제
(제4항)</td><td>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재학생(1호) ⇒ 당해연도 재학증명서
신규 면허 취득자(2호) ⇒ 자격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 (3호) ⇒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td></tr><tr><td>유예
(제5항)</td><td>본인의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2항)
● 병원 : 입퇴원 확인서</td></tr></table></td></tr>
<tr><td>72p</td><td>5)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2)항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td><td>(5)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2)항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td></tr>
</table>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공통사항】		
78p	✓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 ■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와 같거나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구분** / **참여율** 전담 인력 / 월 급여 * 100% 이내 보조 인력 / 월 급여 * 30% 이내 기획, 회계 담당 등 / 월 급여 * 20% 이내	✓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 ■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보다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1시간당 간접비 * 8시간 ≤ 협회비)** ■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구분** / **참여율** 전담 인력 / 월 급여 * 100% 이내 보조 인력 / 월 급여 * 30% 이내 기획, 회계 담당 등 / 월 급여 * 20% 이내
79p	**나. 회계처리**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협회 회비 및 일반운영비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 - 보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익년도 보수교육 수입으로 계상하여 비용 산출하거나 보수교육 관련 사항으로만 지출	**나. 회계처리**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협회 회비 및 일반운영비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 - 보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익년도 보수교육 수입으로 계상하여 비용 산출하거나 보수교육 관련 사항으로만 지출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별도의 계좌*로 사용 *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
84p	**사. 기타 협조 요청 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사. 기타 협조 요청 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직접비)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 중앙회·지부 필수과목 지정,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신설> ○ <신설>	○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 중앙회·지부 필수과목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단, 의료인 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시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하에 시행 가능) ○ 의료기사 등 협회는 해당연도 10~12월에 개설하는 온라인 강의 일정을 9월말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할 것

제 I 부

면 허 신 고

Ⅰ 면허신고

1 개 요

가. 추진 배경

○ 보건의료인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나. 추진 경과

○ 의료인,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도입 및 시행

-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의료인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 및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출(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09.7.30)
-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TF('09.11월~)」 및 「의료기사 면허관리체계개선 TF('11.3월~)」 구성·운영
- 「의료법」 개정('11.4.28 공포, '12.4.29 시행) 및 의료인 면허 신고 시행('12.4월~)
- 「의료기사법」 개정('11.11.22.공포, '14.11.23.시행) 및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 시행 ('14.11월~)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 및 시행

- 「의료법」 개정('15.12.29 공포, '17.1.1 시행) 및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시행('17.1월~)

다. 법적 근거

(1) 의료인의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법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2)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이하 "간호조무사규칙")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①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면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라. 면허신고 수리 업무 관련 위탁

(1)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수리업무 위탁 기관 : 각 협회 중앙회*

○ **(의료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의료법
제25조(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의료기사등)**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의료기사법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간호조무사)**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

- 자격신고 접수 업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만 해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관리
   나.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각종 통계의 생산·분석 및 제공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및 이수 자료 관리
3.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규칙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의료인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가. 면허신고 대상 : 모든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 및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의료인)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1)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2. 4. 29부터 '13. 4. 28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2.4.29~'12.12.31)에 신고하였으면, '15.1.1~'15.12.31에 재신고
- ('13.1.1~'13.4.28)에 신고하였으면, '16.1.1~'16.12.31에 재신고

○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0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8년도에 최초로 신고한 다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2) **'12.4.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그룹명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2.4.29～2012.12.31	2015	2018
3B	2013.1. 1～2013.12.31	2016	2019
3C	2014.1. 1～2014.12.31	2017	2020
4C	2015.1. 1～2015.12.31	2018	2021
산식	X	(X+3)	(X+6)

* 면허를 '15.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8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면허를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예) '10.3.20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2013년 면허신고 이전에 2013.4.23.에 면허 취소되어 2018.3.20.에 재교부 받았다면, 취소기간인 2013, 2014, 2015, 2016, 2017년은 면제, 2011, 2012년까지 취업상황, 실태 등을 신고한 후 해당업무 복귀, 면허 재발급 받은 해(2018년)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2021년에 면허신고

※ 절차: 면허취소 → 면허재발급 → 면허신고 → 업무 복귀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의료기사등)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1)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5.1.6부터 '15.11.22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2차 신고 : '18.1.1~'18.12.31에 실시

○ 단, '14.11.23.~'14.12.31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본인 희망 시 3년 뒤인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신고 가능(일괄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행정처분하지 않음)

○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4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0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8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2) ′15.1.1.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인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최초 신고

그룹명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5.1.1.~2015.12.31	2018	2021
3B	2016.1.1.~2016.12.31	2019	2022
3C	2017.1.1.~2017.12.31	2020	2023
4C	2018.1.1.~2018.12.31	2021	2024
산식	X	(X+3)	(X+6)

※ (예) 면허를 ′16.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9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발급자**

○ 면허 취소 의료기사등이 면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면허를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예) ‘12.3.20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등이 ’16.4.23.에 면허 취소되어 ’18.3.20.에 재교부 받았다면, 취소기간인 2016, 2017년은 면제, 2014, 2015년까지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절차: 면허취소 → 면허재발급 → 면허신고 → 업무 복귀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다.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라. 신고방법 및 절차

(1) **의료인 및 의료기사등은** 각 소속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 작성 →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첨부서류】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 · 유예 확인서(별지서식)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인이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지회 또는 분회가 대신 입력 허용

** 의료기사등은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면허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

(2) **중앙회장(협회의 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 결정 통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신고요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 · 유예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의료기사등의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 의료기사등 협회는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함

○ 의료인, 의료기사등 각 협회는 교육 이수자 및 면제·유예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유예 확인서를 면허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

- 단,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

※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 우편 송달 비용은 각 협회가 부담

3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가. 자격신고 대상 : 모든 간호조무사

○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자격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교부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연도별 자격신고기간

(1) **'17.1.1.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7. 1. 1.부터 '17. 12. 31.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7.1.1.~'17.12.31.)에 신고하였으면, '20.1.1.~'20.12.31.에 재신고

○ '17.1.1.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6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5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9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실태 등 신고

(2) **'17.1.1. 이후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그룹명	자격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7.1.1~2017.12.31	2020	2023
3B	2018.1. 1~2018.12.31	2021	2024
3C	2019.1. 1~2019.12.31	2022	2025
≀	≀	≀	≀
산식	X	(X+3)	(X+6)

* 면허를 '17.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020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자격취소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을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자격증을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

월 말일까지 신고

※ (예) '10.3.20에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가 2017년 자격신고 이전에 2013.4.23.에 자격 취소되어 2018.3.20.에 재교부 받았다면, 취소기간인 2016, 2017년은 면제, 2018년부터 취업상황, 실태 등을 해당업무 복귀전에 신고

※ 절차: 자격취소 → 자격재발급 → 자격신고 → 업무 복귀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다. 신고내용 : 취업상황 등 신고서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간호조무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

라. 신고방법 및 절차

(1) **간호조무사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 → 협회장에게 제출 (간호조무사규칙 제13조제2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서식)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간호조무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

**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자격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

(2)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및 '반려' 결정 통지 (간호조무사규칙 제13조제2항)

【신고요건】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외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u>자기근무이력확인서</u>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운영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

○ 협회는 교육 이수자 및 면제·유예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유예 확인서를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

- 단,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

※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 우편 송달 비용은 협회가 부담

4 면허(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가. 미신고시 행정처분 :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가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

【행정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나.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면허효력 회복 절차

보건의료인	면허 ⇨ 신고	협회	신고 ⇨ 보고	복지부	회복 ⇨ 통보	관계기관, 민원인*

① **(복지부)** 민원인에게 효력정지 처분 통보 시 상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내용 안내**/ 중앙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효력 회복 통보**

② **(협 회)**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보건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12조의2제3항)

* 각 협회(중앙회)에서 민원인에게 효력회복 통보

5 면허(자격)신고업무 관련 행정사항

가. 면허(자격)신고 결과 보고 (보건의료인 협회 전체)

○ 면허(자격)신고업무 수탁기관은 **신고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 (의료인 중앙회장)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내용을 엑셀 자료로 저장(**반드시 비밀번호 설정**)하여 제출

-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 협회장)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취업상황 등 신고서(별지 제3호의2/ 별지 제9호서식)" 내용을 면허(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나. 인터넷 기반의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 운영 (의료인협회)

○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일체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과정 없이 본인 확인* 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축 (필요시 중앙회 시스템 상 면허번호와 신청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시스템 활용 등

○ 중앙회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 · 유예 여부를 신고 의무자가 항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면허 신고 시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 · 유예 여부, 보충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하여 설계

*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 · 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시스템 구축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신고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작성한 신고 내용에 대한 중간 저장(신고의 의미가 아님)은 가능하도록 함

○ 신고 수리 시에는 의료인이 신고 수리 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수리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통보

○ 신고를 마칠 때, 해당 의료인의 다음 신고 시점을 안내

○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 지회 또는 분회의 신고 대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다.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면허신고수리 거부 절대 금지

○ 면허(자격)신고는 의료법 제25조, 제80조제4항 및 의료기사법 제11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 **신고요건(보수교육 이수 등)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제Ⅱ부

보 수 교 육

Ⅱ 보수교육

1 개 요

가. 추진 목적

○ 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 함

나. 추진 경과

○ ’81. 12. 31 : 의료인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82. 4. 2 :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94. 1. 7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의료법 개정・시행 ’94.07.08)

○ ’95. 1. 5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시행 ’95.10.06)

○ ’96. 10. 31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 50만원

○ ’97. 8. 4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70만원
- 조산사・간호사 : 50만원
- 간호조무사 : 20만원

○ ’99. 6. 30 :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교육을 협회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규정 폐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 ’99. 8. 13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의료기사 보수교육시간 : 10시간 → 8시간

○ ’00. 6. 30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 1차 위반 시 : 경고

  ·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 자격정지 7일

○ 2000. 10. 21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 의료인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 → 8시간

○ 2011. 04. 28 :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신고제 도입(‘12.4.29시행)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 2011. 11. 22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면허신고제 도입 (‘14.11.23시행)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 2016. 05. 29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미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16.11.30 시행)

○ 2017. 01. 01 : 의료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17.01.01 시행)

다. 법적 근거

○ (의료인) 의료법 제30조제3항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의료기사법
제20조(보수교육) ①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보수교육)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라. 보수교육 업무 주관

(1) 의료인의 보수교육 주관기관 : 각 협회 중앙회*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의료기사등 보수교육 위탁기관 : 각 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의료기사법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위탁)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협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고시 제2000-18호)

의료기사등	교육기관
임상병리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	대한방사선사협회
물리치료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의무기록사	대한의무기록협회
안경사	대한안경사협회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 공모를 통해 선정

의료법
제8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위탁)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만 해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의료인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대상 : 모든 의료인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의료법 제30조제3항)

-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으면, 면허증 재교부 일로부터 다시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재교부 받은 자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중인 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군대에 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

2011년도 보수교육 면제 기준

■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이전 의료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의료법 시행규칙(2011년도 기준)

제20조(보수교육)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8.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치과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17년도에 치의학대학원이 아닌 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

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예1) '18.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

(예2)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8.11월 입대 후 '20.8월 제대한 경우, '18년 보수교육 이수, '19년 보수교육 면제, '20년 보수교육 면제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예: 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이라면 보수교육 면제)

■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 '18.3.17～'18.9.16 : 6개월 미만

'18.2.2～'18.8.2 : 6개월 이상

'18.4.2～'18.10.3 : 6개월 이상

※ 비전속근무자(주 3일 근무 등)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18.1.1(최초근무일)～'18.6.28일(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

■ 육아휴직 중인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아이 1명당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해당연도만 면제

*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 휴직 개월 수를 포함하여 산정

※ 2018년도 출산 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예1) '18.5.1일 출산, 90일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18.7.29일 복직한 경우는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2) '18.11.1일 출산예정일, '18.9.23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1년 육아휴직('18.12.21～'19.12.20), '19.12.2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도 보수교육 대상(8시간)

(예3) '18.2.1일 출산, '18.5.1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퇴사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4) '18.12.1일 출산, '19.2.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2년 육아휴직('19.3.1～'21.2.28), '21.3.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 비대상, '20년 비대상, '21년 보수교육 대상(1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해당 예) 휴직자, 퇴직자, 교수 및 연구원, 일반·행정기관 종사자, 해외체류자 등

* 각 의료인 별 면허범위 내 업무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0호의2 서식)**" 작성** → 중앙회장에게 제출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면제 (제6항)	전공의(1호)	⇒ 재직증명서(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2호)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규 면허 취득자(3호)	⇒ 면허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4호)	⇒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유예 (제7항)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1호) ● 휴직/ 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별지 제10호의2 서식)" 교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유예여부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기간) **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분류

  *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의료인에게도 면제·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면제·유예 인정 집행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4년에 8시간, '15년에 8시간, '16년 4시간, '17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18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16년, '17년 잔여 보수교육 8시간 + '18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사례】

■ '14년～'16년까지 해외 체류 후, '17.1월에 귀국하여 '17.5월부터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18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총 20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14～'16년 유예, '17년 20시간(3년 이상))

■ '14년～'15년에 유예, '16년에 면제(예: '16.1월～12월까지 전공의 신분), '17년 1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18년 면허신고를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 16시간

('14～'15년 유예, '16년 면제, '17년 16시간(2년 이상 3년 미만)

■ '12년 면허신고 완료, '13.1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중 '14.1월부터 '15.12월까지 면허취소, '16.2월 업무복귀하려는 경우

☞ '16.1월 면허 재발급 후 '16년 면허신고를 하고 업무 복귀를 하여야 하며, '16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12년 8시간, '13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14년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데 면허 신고 이전에 '14.3월부터 '15.12월까지 면허취소, '16.1월에 업무복귀하려는 경우

☞ 면허 재발급 후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며, '16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11년～'13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2016년 면허신고 이후 2019년에 면허신고를 다시 해야 함

(3) 교육 내용 평가에 따른 인정시간 부여

○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중앙회가 교육 내용을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시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음

○ 평가 기준은 사무편람에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시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

* 평가기준에 따른 인정시간 차등 부여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인정시간 1시간 기준이 실제교육시간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며, 이에 대해 교육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공지 필요

라. 보수교육 내용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18.1.1 시행)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16.9월 입법예고, ’17.3월 공포(‘18.1.1시행)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18년 신고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19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

【협조사항】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2)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취안전 가이드라인 및 환자안전에 관한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15.2월,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아동복지법 제26조)

○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16.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근거 기반**의 **온·오프라인 감염관리** 분야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공유

*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 보수교육 인정 권장

○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 해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3)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중앙회는 해당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장기 미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교육대상) 미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

■ (교육내용)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유휴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보수교육으로 인정

* (공통내용)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윤리 등

* 가급적 업무 복귀한 당해 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 (교 육 비) 시간당 교육비는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1시간당 교육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마. 보수교육실시기관

○ 의료인 보수교육은 중앙회가 실시하여야 하나,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대학·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위탁 실시 가능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가능(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시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하에 시행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이

매년 21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수교육으로 인정함

○ 지부 또는 전문학회 등에 위탁 실시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해 보수교육 내용, 이수시간 대비 인정 평점, 교육비용 산정 등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

- 교육이 부적절하게 시행되거나 보수교육 사무편람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은 보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엄격하게 관리

3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대상 :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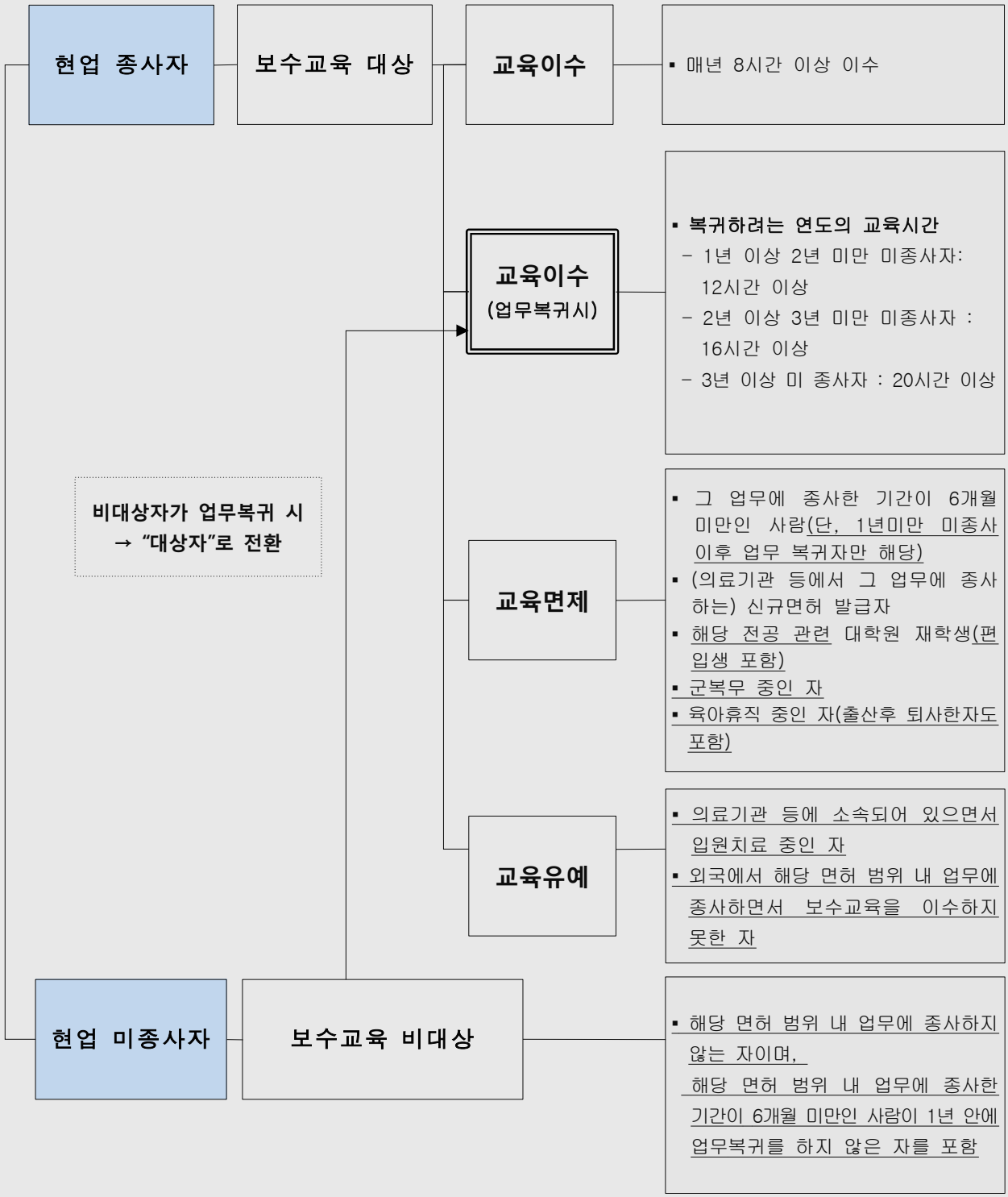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과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법 제20조, ‘16.11.30시행)

- 다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보건의료인면허신고시스템 구현(‘17.7월)시부터 적용)

○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면허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사례】 ‘15년 면허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7.1월부터 ′18.5월까지 면허취소, ′18.6월 면허를 재발급 받아 업무 복귀 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18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16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18년에 면허신고 완료한 자는 3년 후인 2021년에 면허신고를 해야 함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3. 각 의료기사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4. 영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전속・비전속 근무 모두 포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동안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면제신청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해 규칙 시행일 이전(2016.11.30.)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규칙 시행일 이후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처리**

(예시 1) '14.6.1부터 '16.12월말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지 않은 의료기사가 '17.1월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경과조치 규정 적용시 해당 의료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자'로서 '17년도에 1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처리하여 '17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로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필요

(예시 2) '14.6.1부터 '17.12월말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지 않은 의료기사가 '18.1월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경과조치 규정 적용시 해당 의료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자'로서 '18년도에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처리하여 '18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로 12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필요

○ 군 복무 중인 사람

-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사회대체복무 포함)을 의미하며,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은 제외

○ 현재 해당 면허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으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등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사한 자 포함)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2016년도)

- 2014년 1월~2014년 10월 근무, 2014년 11월~2015년 7월 휴직하고 2015년 8월 1일에 면허신고 할 경우, 2014년도는 6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며 2015년도는 해당연도 내 6개월 이상 휴직하였으므로 보수교육 면제

- 2014년 6월~2015년 1월 비전속(주 3일 근무)으로 근무하고 2015년 2월 2일 면허신고 하는 경우, '14년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음(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비전속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임)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2017년 이후)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1학기 또는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예1) '18.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

  (예2)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8.11월 입대 후 '20.8월 제대한 경우, '18년 보수교육 이수, '19년 보수교육 면제, '20년 보수교육 면제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16.1월부터 '17.11월까지 해당 면허범위 내 업무에 미종사(육아휴직, 미취업)하다가 '17.12월에 해당 면허범위 내 업무에 복귀한 자는 2017년 보수교육 면제

  ☞ 2017년에 6개월 미만 업무 종사자이면서 해당 면허범위 업무에 1년 미만 미종사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복귀한 자에 해당

  ☞ 해당 면허범위 내 업무 미종사 기간은 2017.1.1.일부터 기산

-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 ’18.3.17～’18.9.16 : 6개월 미만

’18.2.2～’18.8.2 : 6개월 이상

’18.4.2～’18.10.3 : 6개월 이상

※ 비전속근무자(주 3일 근무 등)는 실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18.1.1(최초근무일)～’18.6.28일(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

■ ’17.1월～’17.10월 근무, ’17.11월～’19.7월 휴직하고 ’19.8월에 복직한 경우, ’17년도 8시간, ’18년 비대상, ’19년도 12시간(1년이상 2년 미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업무 미종사 기간 : ’18.1.1～’19.7월

■ ’17.1월～’17.10월 근무, ’17.11월～’20.7월 휴직하고 ’20.8월에 복직한 경우, ’17년도 8시간, ’18년 비대상, ’19년 비대상, ’20년도 16시간(2년이상 3년미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업무 미종사 기간 : ’18.1.1～’20.7월

■ 한국에서 의료기사 자격을 가지고, 이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국가에서 보수교육에 상당하는 교육이 없다면 보수교육 유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

■ 육아휴직 중인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아이 1명당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해당연도만 면제

*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 휴직 개월 수를 포함하여 산정

※ 2018년도 출산 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예1) ’18.5.1일 출산, 90일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18.7.29일 복직한 경우는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2) ’18.11.1일 출산예정일, ’18.9.23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1년 육아휴직(’18.12.21～’19.12.20), ’19.12.2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도 보수교육 대상(8시간)

(예3) ’18.2.1일 출산, ’18.5.1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퇴사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4) ’18.12.1일 출산, ’19.2.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2년 육아휴직(’19.3.1～’21.2.28), ’21.3.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 비대상, ’20년 비대상, ’21년 보수교육 대상(1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 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보수교육 비대상자와 사실상 차이가 없음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 → 소속 협회의 장에게 제출 (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면제 (제4항)	6개월 미만 종사자(1호) (1년 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	⇒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군복무자 (2호) (군대에서 해당면허 종사자는 제외)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3호)	⇒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규 면허 취득자(4호)	⇒ 면허증 사본
	복지부 장관 안정자(5호)	⇒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예 (제5항)	본인의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5항)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 등은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협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2호의2 서식)" **교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유예여부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기간) **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분류

  *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의료기사 등에게도 면제·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면제·유예 인정 집행

(5)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연도에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중 **'군복무자'**와 **'신규 면허 취득자', '해당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육아휴직 중인자 (출산 후 퇴사한 자 포함)'**은 당해 연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처리**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4)항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사례1】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채용시 의료기사등의 면허가 취업의 조건일 경우

→ 해당 의료기사 면허를 가지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임

다만, 의료기사등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처리

【사례2】 의료기사 자격증 소지가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의무병 및 직업군인으로서 근무시 교육 이수 대상 여부

→ 의무병 등 사병의 특성상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은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는 기간은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보나, 직업 군인(해당면허 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사례3】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해당 전공 관련 교수(실습을 포함한 교육 등)로 재직하는 경우

→ 의료기사등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처리
(다만, 해당 교원이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5년에 8시간, '16년 4시간, '17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18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16년, '17년 잔여 보수교육 8시간 + '18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의료기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의료기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①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최초의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대한 행정해석과의 연관성을 고려,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처리하고 '17.1.1부터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기산**

(예시) '14.6.1부터 '17.12월말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지 않은 의료기사가 '18.1월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특례 규정 적용시 해당 의료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자'로서 '18년도에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처리하여 '18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로 12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필요

(3) 보수교육 유예자 교육 이수 시간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이수시간은 상기 (2)항과 동일하게 적용)**

*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4년부터 기산

(4) 교육 내용 평가에 따른 인정시간 부여

○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의 교육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인정 기준은 사무편람에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시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

* 평가기준에 따른 인정시간 차등 부여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교육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공지 필요

라.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마. 보수교육 내용

(1)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의료기사등**은 각 협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미종사 기간 중의 보수교육을 갈음하거나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하여 대체할 수 있음

○ 장기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의료기사등 협회는 장기미종사자가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미종사 기간 중 보수교육으로 인정

【장기 미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교육대상)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교육내용)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미종사 기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보수교육으로 인정

* (공통내용) 의료법령 및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직업윤리 등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

* 가급적 업무 복귀한 당해 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 (교 육 비) 시간당 교육비는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1시간당 교육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아동복지법 제26조)

○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바. 보수교육실시기관

(1) 보수교육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각 협회는 보수교육 교재관리, 강사선정, 출결관리,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 평가 등 보수교육실시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리강화를 위해 '**보수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보수교육 실시 방법

○ 각 협회는 소속 지회, 관련 직역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관련 분야별 교육기관 및 보건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 가능

- 다만,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함으로써 보수교육을 듣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

* 수도권은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연 3회 이상, 그 외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연2회 이상 실시 요망/ 곤란한 경우 온라인 교육 적극 활용

○ **평점이 이월이 되지 않는 만큼, 교육과목 선택에 따라 평점의 총합이 8점이 될 수 있도록 과정 편성**

* 예를 들어 강원지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3점, 3점 4점 3과목이라고 했을 때, 총점이 10점이 됨(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 교육을 듣기도 어려움). 평점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사이버교육 평점 배분을 적절히 하여 대체 수단 마련

○ **교육실시기관별 상한 점수 인정제도 개선 필요**

(3)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절차 및 교육실시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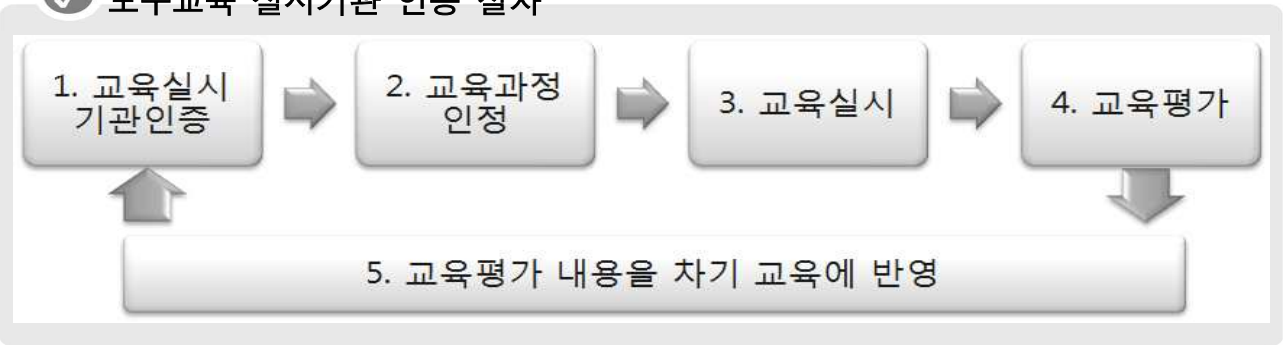

① **(교육실시기관 인증)** 신규로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각 협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 협회의 장은 적절한 인증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

② **(교육과정 인정)** 교육실시기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 협회에 인정 신청을 하고, 각 협회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이 **각 직역별 보수교육으로 적합한지 심사**하여 인정 여부 결정

- 의료기술 발달 및 환경변화에 맞춰 의료기사 등의 자질향상 및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인지를 심사하여 판단(형식적인 내용의 교육 지양)

③ **(교육실시)** 각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자의 출결관리 및 교육 분위기 유지, 교육만족도 조사 등 현장에서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각 협회는 교육과정이 심사 당시의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

④ **(교육평가)** 각 협회(중앙회)는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교육현장 감독 시 파악된 사항을 당초 교육 계획과 비교하여 교육을 평가

⑤ **(평가 내용 환류)** 문제 사항을 차기 교육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 결과를 **교육실시기관 재인증 여부에 반영,** 각 기관으로 평가 내용 통보

(4)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및 규정·지침 위반 시 제재사항(교육기관인증취소 등)과 관련한 자체 보수교육 규정 또는 보수교육 업무지침(사무편람)을 마련할 것

○ 각 협회(중앙회)는 인증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해** 내부 심의를 통해 출결관리*, 보수교육 내용, 이수시간 대비 인정 평점, 교육비용 산정 등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것

*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 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각 의료기사단체 중앙회이므로, **보수교육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각 협회 중앙회**임

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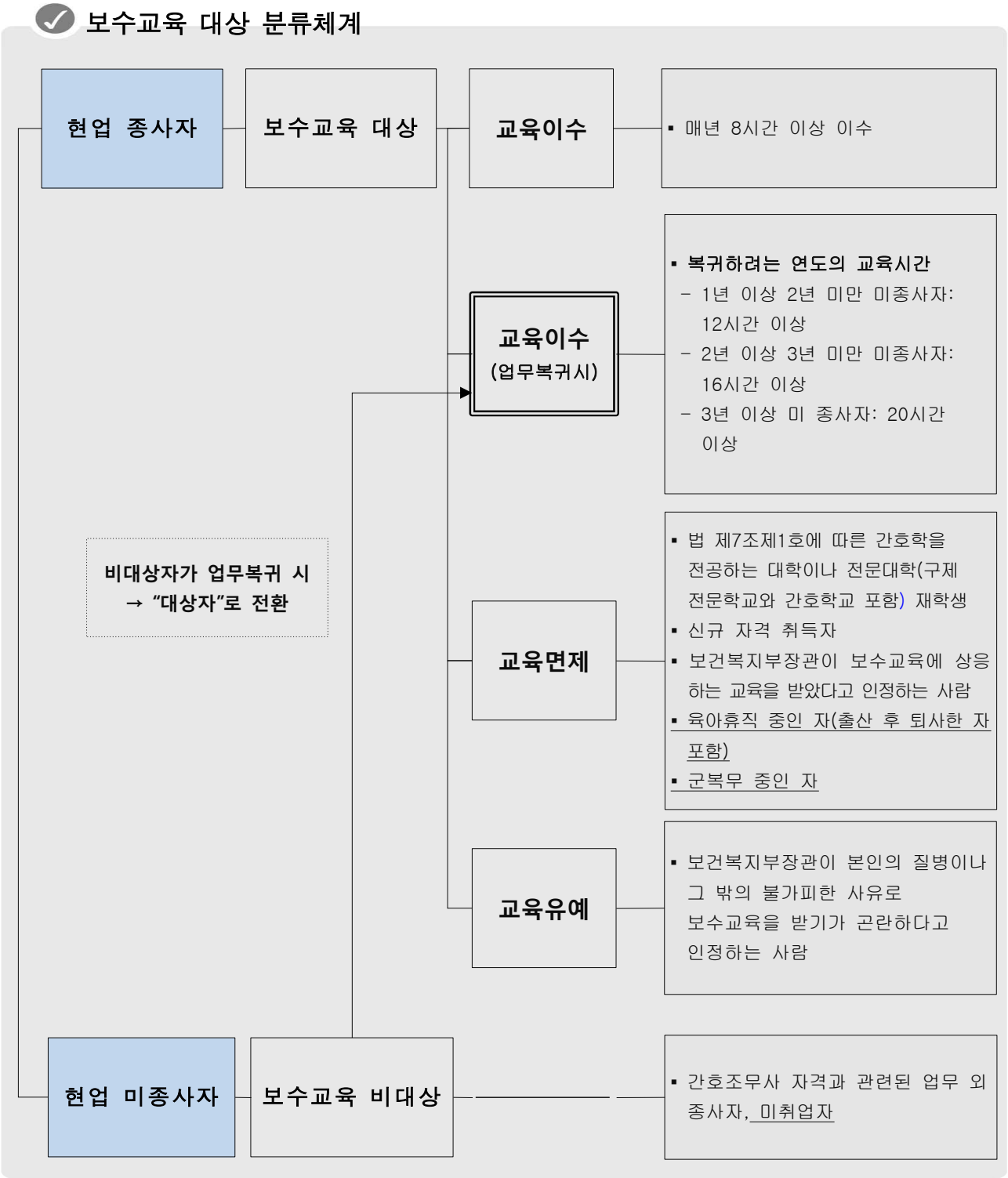

○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 ‘17.01.01시행)

- 다만,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17.1.1일부터 적용)

- 2016년도 업무 미종사자는 유예 대상자임

【사례1】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채용시 간호조무사 면허가 취업의 조건일 경우

→ 해당 간호조무사 면허를 가지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임
다만,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20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으로 처리, 2017년부터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처리

【사례2】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가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의무병 및 직업군인으로서 근무시 교육 이수 대상 여부

→ 의무병 등 사병의 특성상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은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는 기간은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보나, 직업 군인의 경우 보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 자격 취소된 자는 간호조무사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자격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사례】 ‘14년 자격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6.1월부터 ’18.5월까지 자격취소, ’18.6월 자격을 재발급 받았다면 업무 복귀 전에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18년 자격신고를 완료한 자는 3년 후인 2021년에 자격신고를 해야 함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보수교육 면제·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2.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의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군대에서 일반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군대에서 해당자격 종사자는 제외)

* 아이 1명당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해당연도만 면제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간호대학(원)에서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간호대학(원)에서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간호조무사가 의과(치과, 한의과)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는 의료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자격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2017년 2월~2017년 10월 의원 근무, 2017년 11월~2019년 7월 휴직하고 2019년 8월부터 다시 근무하여 2020년 1월에 자격신고 할 경우, 2017년도는 근무했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는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하므로 12시간의 보수교육 의무 발생(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 2017년 6월~2018년 비전속(주 3일 근무)으로 병원에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 2020년 2월 자격신고 하는 경우 2017년, 2018년도는 근무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보수교육 대상 아님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비전속 근무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임)

■ 육아휴직 중인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아이 1명당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해당연도만 면제

*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 휴직 개월 수를 포함하여 산정

※ 2018년도 출산 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예1) '18.5.1일 출산, 90일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18.7.29일 복직한 경우는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2) '18.11.1일 출산예정일, '18.9.23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1년 육아휴직('18.12.21～'19.12.20), '19.12.2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도 보수교육 대상(8시간)

(예3) '18.2.1일 출산, '18.5.1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퇴사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4) '18.12.1일 출산, '19.2.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90일) 후 2년 육아휴직('19.3.1～'21.2.28), '21.3.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보수교육 면제,

'19년 비대상, '20년 비대상, '21년 보수교육 대상(1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 군복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군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수교육 이수, 6개월 미만이면 보수교육 면제

(예)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8.11월 입대 후 '20.8월 제대한 경우, '18년 보수교육 이수, '19년 보수교육 면제, '20년 보수교육 면제

■ 6개월 미만 여부는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 '18.3.17~'18.9.16 : 6개월 미만

'18.2.2~'18.8.2 : 6개월 이상

'18.4.2~'18.10.3 : 6개월 이상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

보수교육 유예여부 유권해석례

■ '17.1.1.부터 하루라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이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국가에서 보수교육에 상당하는 교육이 없다면 유예대상자로 관리해야 함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임)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제3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면제 (제1항)	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재학생(1호)	⇒ 당해연도 재학증명서
	신규 면허 취득자(2호)	⇒ 자격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 (3호)	⇒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예 (제2항)	본인의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교부*** (간호조무사 규칙 제15조제4항)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유예여부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기간) **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분류

*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간호조무사에게도 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유예 인정 집행

(5)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4)항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제1항)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8년에 8시간, '19년 4시간, '20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1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19년, '20년 잔여 보수교육 8시간 + '21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간호조무사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3) 보수교육 유예자 교육 이수 시간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이수시간은 상기 (2)항과 동일하게 적용)**

(4) 교육 내용 평가에 따른 인정시간 부여

○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의 교육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인정 기준은 사무편람에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시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

* 평가기준에 따른 인정시간 차등 부여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교육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공지 필요

라.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마. 보수교육 내용

(1)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간호조무사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별도로 마련한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미종사 기간 중의 보수교육을 갈음하거나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하여 대체할 수 있음

○ 장기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장기미종사자가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미종사 기간 중 보수교육으로 인정

【장기 미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교육대상)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교육내용)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미종사 기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보수교육으로 인정

* (공통내용) 의료법령 및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직업윤리 등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

* 가급적 업무 복귀한 당해 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 (교 육 비) 시간당 교육비는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1시간당 교육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아동복지법 제26조)

○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바. 보수교육실시기관

(1) 보수교육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보수교육 교재관리, 강사선정, 출결관리,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 평가 등 보수교육실시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리강화를 위해 '**보수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보수교육 실시 방법

○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소속 지회, 관련 직역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관련 분야별 교육기관 및 보건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 가능

- 다만,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함으로써 보수교육을 듣고자 하는 <u>간호조무사에게</u>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

* 수도권은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연 3회 이상, 그 외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연2회 이상 실시 요망/ 곤란한 경우 온라인 교육 적극 활용

○ **평점이 이월이 되지 않는 만큼, 교육과목 선택에 따라 평점의 총합이 8점이 될 수 있도록 과정 편성**

* 예를 들어 강원지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3점, 3점, 4점 3과목이라고 했을 때, 총점이 10점이 됨(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 교육을 듣기도 어려움). 평점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사이버교육 평점 배분을 적절히 하여 대체 수단 마련

○ **교육실시기관별 상한 점수 인정제도 개선 필요**

(3)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절차 및 교육실시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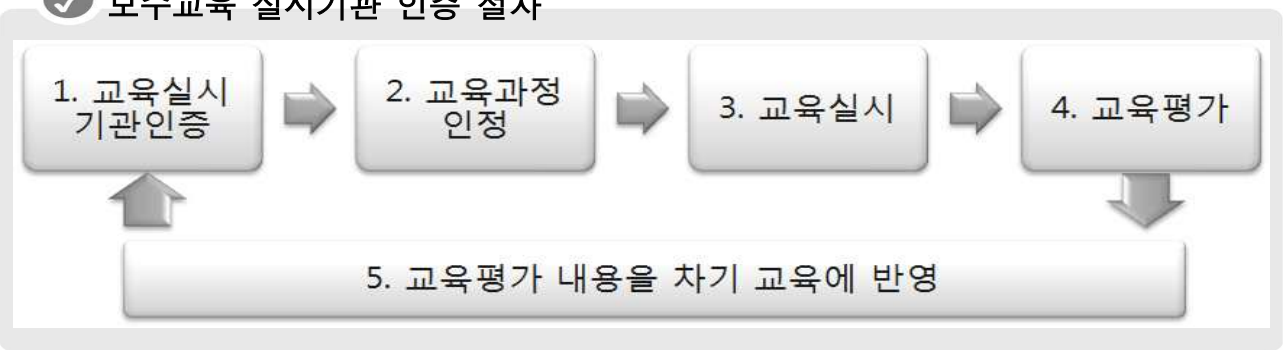

① **(교육실시기관 인증)** 신규로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위탁기관(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위탁기관(협회 등)은 적절한 인증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

② **(교육과정 인정)** 교육실시기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수교육 위탁기관(협회 등)에 인정 신청을 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협회 등)는 해당 교육과정이 **각 직역별 보수교육으로 적합한지 심사**하여 인정 여부 결정

- 의료기술 발달 및 환경변화에 맞춰 간호조무사의 자질향상 및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인지를 심사하여 판단(형식적인 내용의 교육 지양)

③ **(교육실시)** 각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자의 출결관리 및 교육 분위기 유지, 교육만족도 조사 등 현장에서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협회 등)은 교육과정이 심사 당시의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

④ **(교육평가)** 보수교육 위탁기관(협회 등)은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교육현장 감독 시 파악된 사항을 당초 교육 계획과 비교하여 교육을 평가

(4)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및 규정·지침 위반 시 제재사항(교육기관인증취소 등)과 관련한 자체 보수교육 규정 또는 보수교육 업무지침(사무편람)을 마련할 것

○ 보수교육 위탁기관(협회 등)은 인증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해** 내부 심의를 통해 출결관리*, 보수교육 내용, 이수시간 대비 인정 평점, 교육비용 산정 등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것

*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 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5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보건의료인 협회 전체)

가. 보수교육 비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간접비+직접비)

○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 간에 동일* 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 협회비 납부 회원에게 보수교육 직접비를 할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를 차등하는 것은 모두 불인정함**

보수교육 직접비 산출

■ 각 교육별로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

■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 보다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1시간당 간접비 * 8시간 ≦ 협회비)

■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구분	참여율
전담 인력	월 급여 * 100% 이내
보조 인력	월 급여 * 30% 이내
기획, 회계 담당 등	월 급여 * 20% 이내

○ 보수교육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보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환불기준 관련 규정 마련**

- 보수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간접비는 100% 환불

보수교육 관련 홈페이지 게시사항 안내

- 보수교육비 편성 내역 및 산출근거를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게시
- 보수교육비 환불 조건 및 기준 명시
- 연중 보수교육 계획 및 상세 일정 등

나. 회계처리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협회 회비 및 일반운영비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

- 보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익년도 보수교육 수입으로 계상하여 비용 산출하거나 보수교육 관련 사항으로만 지출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별도의 계좌*로 사용

*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

다. 기타 수수료 관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책정 및 부과 금지**

6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보건의료인 전체)

○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개별 기준 가목의 21, 다목의 12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 자격정지 7일

나. 보수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기사등 협회)

○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의료기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	400	500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	500	500

7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보건의료인 협회 전체)

가.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1) 보수교육 계획

○ 중앙회장(협회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집합·사이버 등), 교육 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별지 제11호/ 별지 제13호)를 **작성·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연중 보수교육계획은 각 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 구성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게시

(2) 보수교육 실적 보고

○ 중앙회장 및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매년 4월말까지,** 협회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자 수,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 전년도 보수교육 운영 결과에 대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의2)를 **작성·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면허(자격)신고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관리

나. 보수교육 이수증 등 각종 서식 발급

○ 중앙회장(협회의 장)은 해당 의료인,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이수증, 면제·유예 확인서 발급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 및 제21조제2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 및 제19조제3항/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인은 면허 신고 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설계 (※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증은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로 함

- 신고 수리 시 중앙회장(협회의 장)은 해당 의료인의 최근 신고년도*부터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의료인은 2011년을, 의료기사등은 2014년을, 간호조무사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함

다. 보수교육 관계서류 보존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보수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1조)

【관계서류】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명시)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것

(1) 관련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1. 각 중앙회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
2.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기준·절차
   * 실시기관 자격요건, 심사기준, 제출서류(관련 서식 포함), 인증 절차 등 명시
3. 보수교육 프로그램 인정 기준·절차
   * 심사기준*, 제출서류(관련 서식 포함), 인정 절차 등 명시
   ** 보수교육으로서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인정신청 시간의 적절성, 보수교육 비용의 합리적 산출여부는 심사항목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
4.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 보수교육 운영과정에서 실시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역할 명시
5. 보수교육비(직접비, 간접비) 산출기준

【권장 기재사항】

1. 온라인 교육 관련 사항
2.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관련 Q&A

마. 보수교육 운영관리 강화

○ **(출결관리 강화)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협회 내 평가 강화)** 협회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 운영현황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보수교육평가단 협의체" 운영방안 안내

■ (구 성) 복지부 내 보수교육평가단 협의체 구성*('16.9월)

* 의료인 단체(각 협회별 2명),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로 협의체 구성

■ (역 할) 각 협회별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현황, 보수교육 운영현황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운 영) 반기별 1회 정기회 개최(2월, 9월)

바. 각종 협회 규정 개정

○ 각종 협회 규정(정관시행 세칙, 보수교육규정, 윤리위원회규정 등)이 **개정된 의료법령 등**(업무지침 포함)**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

사. 기타 협조 요청 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직접비)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 중앙회·지부 필수과목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단, 의료인 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시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하에 시행 가능)

○ 의료기사등 협회는 해당연도 10~12월에 개설하는 온라인 강의 일정을 9월말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할 것

○ 보수교육 관련 민원 발생 방지대책 수립·운영

- 회원·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출결관리 및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보수교육 업무 관리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는 **제 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 위탁할 예정**

○ 문의사항 안내 관련

- 소속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

-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우선 안내함

* 각종 홍보물에 협회 콜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제Ⅲ부

참고 서식

1 주요 서식 (의료인)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직종 [ ] 의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조산사 [ ] 간호사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전속, [ ]비전속) 의료기관 근무 [ ] 비의료기관 근무 [ ] 미활동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치과병원 [ ] 치과의원 [ ] 조산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한의원
		근무 의료기관 명칭
		근무 의료기관 주소
	비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 기타( )
		근무지 주소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 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의료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의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전속”이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외의 의료인인 경우에는 “비의료기관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5.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6.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수교육(의무이수 시간: 연간 8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자	성명	면허번호
	직종 [ ] 의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조산사 [ ] 간호사	

신 청 사 유	면제 · 유예 신청 대상 연도
	구체적 면제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 1. 전공의 [ ] 2.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체적 유예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사실 확인 등	➔	기안 결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각 중앙회의 보수교육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에 따라 귀하는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인)

제목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중앙회(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교육예정 인원	교육과목	교육예정 시간	교육예정 일자	소요 예산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210㎜×297㎜

신문용지(2급) 54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인)

제목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중앙회(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자 수	보수교육 대상자 수	보수교육 이수자 수	보수교육 면제자 수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1. 변경 내용	
당초	변경
2. 변경 사유	

210㎜×297㎜

신문용지(2급) 54g/㎡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이수내역:

귀하는　　년도 의료인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면허신고 확인증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귀하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년도에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음 신고연도는　　년입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2 주요 서식 (의료기사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여	출생년도	면허번호
	직종 [ ] 임상병리사 [ ] 방사선사 [ ]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 [ ] 치과기공사 [ ] 치과위생사 [ ] 의무기록사 [ ] 안경사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정규, [ ]비정규) 의료기관 근무 [ ] 비의료기관 근무 [ ] 미활동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치과병원 [ ] 치과의원 [ ] 조산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한의원
		근무 의료기관 명칭/주소
	비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개설,[ ]취업)안경업소 ([ ]개설,[ ]취업)치과기공소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사회복지시설 [ ] 기타( )
		근무 기관 명칭/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출산·육아 [ ] 일시적 폐업·실직 [ ] 질병·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향후 3년 안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 / 복귀 의사 없음 [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 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 귀하

첨부서류	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등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외의 의료기사 등인 경우에는 “비의료기관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자	성명	면허번호
	직종 [ ] 임상병리사 [ ] 방사선사 [ ]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 [ ] 치과기공사 [ ] 치과위생사 [ ] 의무기록사 [ ] 안경사	
신 청 사 유	면제・유예 신청 대상 연도	
	구체적 면제사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 ]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 3. 각 의료기사 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체적 유예사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 ] 1.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수교육실시기관장 귀하

첨 부 서 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사실 확인 등	➔	기안 결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각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면제・유예 내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라
귀하가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수교육실시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경 유)
제 목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보수교육실시기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교육 형태	교육 실시 기관명*	교육 예정 인원	교육 과목	강사 자격	교육 예정 시간	교육 예정 일자	소요 예산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현장교육								
온라인 교육								

붙임 1.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산출근거
2. 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 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기 관 명

수 신 자

(경 유)

제 목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보수교육실시기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자 수	보수교육 대상자 수	보수교육 이수자 수	보수교육 면제자 수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

변경 내용	당초
	변경
변경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 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1.21.>

제　　호

보수교육 이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귀하는　　년도　　차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　　) 보수교육실시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3 주요 서식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6. 12. 30.>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인 적 사 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자격증 발급 연월일			E-mail
	최근 신고연도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 업 상 황	활동 여부	의료기관 근무 ([ ]정규, [ ]비정규 / [ ]전일제, [ ]시간제) 비의료기관 근무 [ ] 미취업 [ ]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치과병원 [ ] 치과의원 [ ] 조산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한의원 [ ] 기타( )
		[ ] 간호조무 업무 [ ] 간호조무 외 업무 ([ ] 접수·수납, [ ] 인증평가 지원 , [ ] 기타)
		근무 의료기관 명칭/주소
	비의료기관 근무자	간호조무 업무 [ ] 노인장기요양기관 [ ] 보육시설 [ ] 산후조리원 [ ] 기타 ( )
		간호조무 외 업무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사회복지시설 [ ] 기타( )
		근무 기관 명칭/주소
	미취업	미취업 사유 [ ] 출산·육아 [ ] 이직 기간 중 일시적 휴직 [ ] 질병·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
		향후 3년 안에 간호조무사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 / 복귀 의사 없음 [ ]

보 수 교 육	20 년	보수교육 대상여부 : [ ] 이수 [ ] 면제 [ ] 유예 [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20 년	보수교육 대상여부 : [ ] 이수 [ ] 면제 [ ] 유예 [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20 년	보수교육 대상여부 : [ ] 이수 [ ] 면제 [ ] 유예 [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1. 보수교육 이수증 (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매 3년마다 자격증 발급일 또는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
   -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취업상황은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하며, 의료기관 근무자, 비의료기관 근무자, 미취업자는 각각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4.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5. 보수교육은 신고시점은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각 작성합니다.
6.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6. 12. 30.>

제 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수교육 이수 내역		자격증 번호	제 호

귀하는 년도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20g/㎡)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6. 12. 30.>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자	성명	자격증 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신 청 사 유	면제・유예 신청 대상 연도
	면제사유(「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5제1항) [ ]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합니다) 재학생 [ ] 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유예사유(「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5조제2항) [ ] 1. 본인의 질병 [ ] 2.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백상지 80g/㎡)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6. 12. 30.>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제·유예 사유		자격증 번호	제 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20g/㎡)